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축 산 과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6. . .
발 의 자	장미경 의원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미경 의원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6. . .

발 의 자: 장미경 의원(1인)

찬 성 자: 김원섭·김정미·김현경·김효석
박윤경·소진혁·임명섭·장세구
의원(8인)

1. 제안이유

2021년 국제공인승마경기장으로 지정되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명칭을 구미국제승마장으로 변경하고, 2017년 개정 이후 장기간 동결된 승마장 이용요금을 현실화 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개정 및 명칭 변경(구미국제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제2조)

나. 이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탄력적·효율적으로 운영(안 제13조)

다. 승마장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변경(별표1, 별표2)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부서검토: 축산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구미국제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구미시 승마장”을 “구미국제승마장”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구미시 승마장”을 “구미국제승마장”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사용료 감면)”을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료”를 각각 “사용료 및 이용료”로 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금액		비고
		평일	공휴일	
승마장 시설 사용료	구미시민	200,000	300,000	기준 : 1일당, 8시간
	시민외	250,000	350,000	
마방 사용료	구미시민	20,000		기준 : 1일 1두 기준 (사료 및 톱밥 미제공)
	시민외	30,000		
마필 조련비		1,200,000		기준 : 1개월 1두 기준 (마방 사용료 포함)
마필 대여료		100,000		기준 : 1일 1두 기준

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용자 구분		이용료(1명 기준)	이용범위	비 고
1일 기승자	구미시민	성 인 : 20,000원 청소년 : 15,000원 어린이 : 10,000원	실내, 실외마장 이용 승마교관 강습	승마모자, 승마복, 승마부츠 대여 포함 상해보험 가입
	시민외	성 인 : 25,000원 청소년 : 20,000원 어린이 : 15,000원		
자마 회원	구미시민	월/600,000원	승마장 전 시설이용 및 자마 위탁관리	사료·툽밥만 제공 진료비, 장제비 등 별도, 기승시간 제한 없음
	시민외	월/800,000원		
월 회 원 (자마 미보유 회원)	구미시민	성 인 : 300,000원 청소년 : 250,000원 어린이 : 200,000원	승마장 전 시설이용 및 승마교관 강습	승마모자, 승마복, 승마부츠 대여 포함 상해보험 가입
	시민외	성 인 : 350,000원 청소년 : 300,000원 어린이 : 250,000원		
쿠폰제 회원 (10장 기준)	구미시민	성 인 : 180,000원 청소년 : 130,000원 어린이 : 80,000원	승마장 전 시설이용 및 승마교관 강습	승마모자, 승마복, 승마부츠 대여 포함 상해보험 가입
	시민외	성 인 : 230,000원 청소년 : 180,000원 어린이 : 130,000원		
승마체험 (1인당)		성 인 : 5,000원 청소년 : 4,000원 어린이 : 3,000원	승마장 주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의 요금에 관한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구미시 승마장 및</u> <u>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u> <u>조례</u>	<u>구미국제승마장 및</u> <u>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u> <u>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구미시 승마장</u> 및 공동육성조련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구미국제승마장</u>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승마장 시설”이란 <u>구미시 승마장</u> 및 공동육성조련시설(이하 “승마장”이라 한다)의 클럽하우스, 실내마장, 실외마장, 원형마장, 마사 등과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1. ----- <u>구미국제승마장</u> ----- ----- ----- ----- ----- --.
2. ~ 11. (생략)	2. ~ 11. (현행과 같음)
제13조(<u>사용료 감면</u>)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u>사용료</u> 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u>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u>) ① ----- ----- <u>사용료 및 이용료</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계획서를 시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공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및 이용료-----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검 토 의 건 서

부서명 : 축산과

조 례 명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53조, 제156조, 제161조 ☐ 주요 사항 ○ 명칭 변경(안 제1조, 제2조) ▪ (당초) 구미시 승마장 → (변경) 구미국제승마장 ○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당초) 사용료 감면 → (변경)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 승마장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변경(안 별표 1, 별표 2) ☐ 검토 결과 ○ 구미시 승마장 명칭 변경 ▪ 국제공인승마경기장으로서의 브랜드 가치와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고 공공 승마시설의 명확한 식별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미국제승마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용료 감면 기준 추가 ▪ 인상된 승마장 이용료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함 ○ 승마장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변경 ▪ 2017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승마장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승마서비스 품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 구미시 승마장 위상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 기준 마련으로 공공 승마장 경쟁력 강화 ○ 소요예산 :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수반(비용 발생) 요인 없음 ○ 문 제 점 : 해당사항 없음	